

제340회 임시회
2015. 6. 11.(목)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박한범 의원 등 7명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5년 6월 1일

○ 회부일자 : 2015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2015년 6월 10일

○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정책복지위원회 박한범 의원)

가. 제안이유

○ 위원의 제척·회피·위촉 해제 사유 명시 및 비밀유지 규정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규제개혁 관련 공적이 있는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적극성을 부여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여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1)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신설(안 제4조의2)
- 2)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신설(안 제6조의2)

나. 위원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 조항 신설
(안 제6조의3)

다. 규제개혁 관련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포상 근거조항 신설(안 제11조)

라. “규제개혁추진단” 및 “규제개혁추진단장” 을 “규제개혁
관련 업무부서” 및 “규제개혁 관련 업무부서의 장” 으로 수정
(안 제7조, 안 제8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 “새로이” 를 “새로” 로 수정(안 제4조)
- “하는 때” 를 “할 때” 로 수정(안 제6조제3항)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맹정호)

- 현행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충북도의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2014.7.17.일자로 구성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 규제 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 사항,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및 “위촉해제”, “비밀유지” 조항 등을 신설하고, 규제개혁 관련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한 것임.

○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관련 상위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화 하였고(안 제1조)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둘째, 위원회 책임성 확보를 위한 “위촉 해제” 규정(안 제4조의2) 및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안 제6조의2)을 마련하였으며,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 조항(안 제6조의3)을 신설함.

셋째, 규제개혁 관련 공적이 현저한 개인·기업·단체·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안 제11조)하였으며

넷째, 규제개혁추진단 부서·부서장 명칭을 ‘규제개혁 관련 업무 부서’ 및 ‘규제개혁 관련 업무부서의 장’으로 변경(안 제7조, 안 제8조)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의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사안의 경우, 이해

충돌 방지의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 위원의 비밀유지 및 위촉 해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법리적·내용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를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새로이**” 를 “**새로**” 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심사 안건 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6조제3항 본문 중 “하는 때” 를 “할 때” 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심의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심의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제척·회피 등으로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 안건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중 “규제개혁추진단장” 을 “규제개혁 관련 업무부서의 장”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규제개혁추진단” 을 “규제개혁 관련 업무부서” 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행정규제기본법</u> 」 <u>제3조제3항</u> 에 따라 ----- ----- .
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u>새로이</u>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 ----- ----- <u>새로</u> ----- ----- .
<신 설>	<u>제4조2(위원의 위촉 해제)</u> 도지사는 <u>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u> 1. <u>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u> 2. <u>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u> 3. <u>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u> 4. <u>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u> 5. <u>제6조의3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심사 안건 내용을 누설한 경우</u>

현행	개정안
<p>제6조(회의운영)</p> <p>① ~ ② (생략)</p> <p>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 장소 등 심의 안건을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제6조(회의운영)</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할 때----- -----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신설></p>	<p><u>제6조의2(위원의 제척·회피)</u>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위원 또는 위원</u>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심의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u>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3. <u>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u> 4. <u>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u>

현행	개정안
<p><신설></p>	<p>5. <u>위원이 심의 안전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u></p> <p>② <u>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p> <p>③ <u>위원의 제척·회피 등으로 안전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적 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u></p>
<p><신설></p>	<p><u>제6조의3(비밀유지)</u>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 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규제개혁추진단</u>장이 된다.</p>	<p>제7조(간사) ----- ----- ----- <u>규제개혁 관련 업무</u> <u>부서의 장</u> ----- .</p>
<p>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p> <p>① (생략)</p> <p>② <u>규제신고센터는 규제개혁추진단에 설치·운영한다.</u></p>	<p>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규제개혁 관련 업무</u> <u>부서</u> ----- .</p>
<p><신설></p>	<p><u>제11조(포상)</u> 도지사는 <u>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u></p>
<p><u>제11조(시행규칙)</u> (생략)</p>	<p><u>제12조(시행규칙)</u>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